

부산지방법원 2024. 3. 22 선고 2023가단36366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2. 23.

판결 선고2024. 3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1,163,890원 및 그 중 49,718,548원에 대하여 2023. 12. 1.부터 갚는 날까지 연 8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가 2019. 6. 10. 주식회사 C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게 1억 5,000만원1) 을 대출하였고,

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, 소외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23. 11. 30. 기준 미상환 대출원리금이 합계 51,163,890원(대출원금 49,718,548원, 이자, 지연배상금 등 1,445,342원)인 사실 등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미상환한 대출원리금 51,163,89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9,718,548원에 대하여 2023. 12. 1.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인 연 8.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광주지방법원 2023회합501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 중이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회생절차에서의 이루어질 회생인가결정에 의하여 정해진 채무액 한도액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,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(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16299 판결)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김현석

1)

2019년 06월 10.일 D	75,000,000	5.9%	60	8.9%	원리금균등분할상환
2019년 06월 10.일 E	75,000,000	5.9%	60	8.9%	원리금균등분할상환